

적립식 예금 약관

제1조 약관 적용 범위

- ① 적립식 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 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이자 및 만기 지급금과 지연입금

- ① 이 예금의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 마다 입금일 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썬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 (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 (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 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 ②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꿀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썬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③ 거래처가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썬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제5조 만기 앞당김 지급

제6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앞당김 이율로 썬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한 때에는 만기 지급일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썬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도해지이율로 썬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 자유적립식예금 특례

-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썬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 제4조 제①항, 제③항, 제④항, 제5조 및 제6조 제③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세금우대종합통장거래

- ① 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예금은 세금우대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 세금우대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 받을 수 있다.
 - 1.예치기간: 1년 이상
 - 2.예치한도: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 예금과 신탁을 포함하여 원금 4,000만원 이내 (전 금융기관 한도 포함)
 - 3.통장수: 세금우대통장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
- ③ 거래처가 중복하여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최초의 세금우대통장이외의 통장을 일반예금으로 바꾸고 이를 거래처에 알린다..